

#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중소기업 사업장 대상 「산업안전 대진단」 집중 안내

- 2월 7일 ‘현장점검의 날’, 설 명절을 맞이하여 건설제조물류 관련 업종 집중점검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한 이후 첫 현장점검의 날을 맞이하여 5인 이상 50인 미만 건설·제조·물류업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을 안내하고, 안전보건 현황을 점검했다.

「산업안전 대진단」은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난 1월 29일부터 4월 말까지 집중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장의 안전관리보건 체계에 대한 자가진단과 진단결과에 따라 상담 및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재정지원 등 지원사업과 연계하고 있다.(붙임1)

자가진단은 컴퓨터(PC)·모바일 접속 혹은 우편·방문을 통해 전달된 자가진단표를 통해 할 수 있다. 자가진단표는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인력·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진단할 수 있는 핵심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진단 결과에 따라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등 맞춤형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신청하는 사업장에 대해 우선 지원하고 있다.

\* 산업안전 대진단 팝업 도메인 주소: <https://www.kosha.or.kr/survey/index.do>

한편, 설 연휴 직전에는 공기·납기를 맞추기 위한 급한 마무리 작업 및 일용직 근로자 활용 증가 등에 따라 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이에, 사업장 안전관리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바 이번 현장점검의 날에는 사업장의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여부(붙임2), 위험성 평가 실시 여부(붙임3) 등을 집중 점검한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즐거운 설 명절을 보내기 위해 일이 바쁘더라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하면서 “정부는 중소기업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재정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총동원하여 산업안전 대진단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1. 산업안전 대진단 안내문

2.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3. 산업현장 위험성평가, 이렇게 하세요!

담당 부서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책임자	과 장	김동현 (044-202-8901)
		담당자	사무관 사무관 주무관	윤주희 (044-202-8902) 이철호 (044-202-8904) 정수빈 (044-202-8908)

# 2024 산업안전 대진단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하고 개선해 보세요!



## 산업안전 대진단, 무엇인가요?

- 중대재해 예방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를 위해 중소 사업장(5~50인 미만) 83만개소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자가진단하고, 정부의 맞춤형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안전수준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 산업안전 대진단, 왜 해야하나요?

- 「산업안전 대진단」을 통해 중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궁극적으로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산업안전 대진단,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 (온라인) PC·모바일로 접속하며, 접속 방법은 아래의 절차를 따라하세요.



- (오프라인) 우편·방문을 통해 안내받은 자가진단표를 작성하고,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통해 상담·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 문의) ☎ 1544-1133

## 산업안전 대진단, 어떻게 진행 되나요?



## 산업안전 대진단, 어떤 혜택이 있나요?

- 첫째, 대진단 실시 후 지원신청 사업장은 신속한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둘째, 상담·지원센터에서 사업장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셋째,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출근에서 퇴근까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한

중대재해 발생의 62.6% 를 차지하는

#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특별관리



# 산업현장 위험성평가, 이렇게 하세요!

위험을 알아야 대책을 마련하고 안전이 확보됩니다.

## 누가 하나요?

주도



사업주

위험성평가가 실시되도록 사업주가 주도하여 총괄 관리

참여



- 안전보건관계자
- 관리감독자(직장·조장·반장·팀장 등)
- 일반근로자
- 협력업체 관계자

## 언제 하나요?

### 1 최초평가

사업장 성립(또는 실착공) 후, 사업장 가동, 공사의 진행 등 1개월 내 착수함을 기준으로 하되, 평가의 실효성이 확보되는 시기에 적절하게 시행

### 2 정기평가

매년 위험성평가 결과의 적정성 재검토

### 3 수시평가

설비·물질 신규 도입 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선택

### 새로운 평가 방식

②+③을 결합하는 새로운 평가

### 2 상시평가 (월·주·일 단위로 일상화된 안전활동)

- 월(月) 1) 노사합동 순회점검 2) 아차사고 분석 3) 재안제도 실시 → 평가
- 주(週) 원하청 합동안전점검회의 → 이행확인 및 점검
- 일(日)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 공유

## 어떻게 하나요?

### 사전준비

- 실시규정 작성
- 담당자·참여자 선정
- 사고사례 수집 및 분석

### 유해·위험요인 파악

- 노사합동 순회점검
- 아차사고 분석
- 재안제도 실시

### 위험성 결정

- 위험성 수준 판단 및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시

- 우선순위에 따른 대책 수립 및 실행

### 공유·기록

- TBM, 교육 등을 통해 공유 및 기록